



징계절차 회부 단계에서 그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부착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게시한 문서의 내용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 징계절차가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알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입증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단계에서의 공개로 원심이 밝힌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관련구성원

기영석

변호사

02-316-4021

ysgi@shinkim.com

박성기

변호사

02-316-4280

skipark@shinkim.com

김종수

변호사

02-316-1678

jsokim@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